의안번호		제 678 호		
의 결		2014년	6월	일
연 월 일		(제330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제 안 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14년 6월 20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678 제안연월일: 2014. 6. 20. 제 안 자: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 주 문

- 수도권 과밀집중 및 지역 불균형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균형발전정책과 획기적인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아래, 개발제한구역(GB)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음
- 이에, 도의회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형발전 의무에 반하고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역량결집 및 도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을 결의

□ 제안이유

-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유발시킬 개발제한 구역(GB) 내 용도 제한 완화 정책을 시행한 정부 규탄
- 우리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염원과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 역량결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하여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3월 제5차 지역경제활성화대책 발표를 통해경제위기 극복과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좋은 규제'로 평가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GB)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GB)내 취락지역을 준주거, 근린, 준공업지역으로 허용하여 공장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제지역 내 취락지역이 전국의 33.3%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에 공장 등 인구밀집시설 신증설로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해제지역 내에 추진중인대규모 개발사업 중 전체의 약 54.5%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와 제123조가 규정한 국토의 균형이용·개발과 보전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과다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의 붕괴를 가 속화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의 수도권집중을 유발시키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개발제한구역(GB) 용도제한 완화 정책을 시행한 정부를 규탄하며,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수도권 집중을 유발시킬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정책 재검토를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규제완화를 감행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수도권 집중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충북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도내 불균형과 비청주권 소외를 막기 위해 충청북도와 시·군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 앞장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충청북도의 올바른 균형 발전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열린 자세와 굳은 결의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민·관·정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4년 6월 20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